

서울특별시 강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심사 보고서

2023년 10월 24일

행정·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3년 10월 16일

나. 발의자: 김현진 의원 외 6명

다. 회부일자: 2023년 10월 17일

라. 상정일자: 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행정·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23. 10. 24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김현진 의원)

□ 제안이유

관내 거리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여 기초예술을 진흥함은 물론 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규정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
다.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(안 제4조)

라. 거리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 범위 규정(안 제5조)

마. 거리예술 활동에 따른 구민 불편사항 방지를 위한 질서유지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대한민국헌법」, 「지방자치법」,
「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- 나. 협조부서: 문화체육과
- 다. 입법예고(2023. 10. 17. ~ 2023. 10. 21.)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장석현)

가. 제정 취지

○ 본 조례안은 지역 내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변화하는 거리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구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안임.

나. 주요 내용

- 안 제1조는 관내 거리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구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함
-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

- | |
|---|
| 1. "거리예술"이란 도로, 광장, 공원,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문학, 음악, 연극, 무용 등을 공연·전시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. |
| 2. "거리예술가"란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 |

- 안 제3조는 다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관내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노력하여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함
- 안 제4조 ～ 5조는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방향 및 재원 확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「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)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, 거리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 범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함

1.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
 2. 거리예술가 및 단체의 육성·창작 지원
 3. 거리예술 지역(명소화 장소) 지정 등
 4.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
 5.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

- 안 제8조는 거리예술가는 활동을 함에 있어 공공장소 이용자 및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고, 구청장은 소음피해 등과 같은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거리예술의 활동시간 · 지역의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였음

다. 종합 의견

- 본 조례안은 거리예술가의 다양하고 자유로운 예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이 이를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
-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4조¹⁾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,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
- 이에 따라, 본 조례안은 강서구민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가깝게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, 공연예술 기회가 적은 지역 예술가들에게 예술활동 기회를 확대,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고 판단됨
- 다만, 혼잡지역에서의 거리예술로 인한 소음분쟁, 교통체증 유발 및 주민의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과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1)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□ 「대한민국헌법」

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,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.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□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3조(문화거리의 지정) ① 문화거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거리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강서구 관내 일정 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지정한다.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거리를 지정할 경우에는 주변의 문화적 시설, 구민의 이용도, 문화적 파급 효과,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.